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두476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공동대표자 김균, 이석태, 정현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박주민, 박진석, 김철호

양홍석, 이장미, 곽경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홍석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790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중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제1, 2, 4 내지 7차 회의의 회의록 및 제6, 7차 회의의 회의자료 전부와 제1, 2차 회의의 회의자료 중 원심판결 별지 기재 순번 제2, 4, 7('4. 기관별 의견' 및 '6. 공청회 발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8번의 각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위원회의 제3 내지 5차 회의의 회의자료 전부와 제1, 2차 회의의 나머지 회의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중 처분사유 추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취지를 명기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 2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김창석 (Red Seal)

주심

대법관

이상훈

이상훈 (Red Seal)

대법관

조희대

조희대 (Red Seal)